

평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91
번호	

제출년월일: 99. 9.

제 출 자: 평창군수

1. 제 안 이 유

99.4.30 개정된 지방재정법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현행 조례 규정의 미비점 보완을 내용으로 하는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 표준안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정코자 함

2. 주 요 내 용

- 가. 공공시설 위탁관리 대상 확대: (종전) 마을회관, 경로당 ⇒ (개정) 지방자치법 제135조①항의 주민복지를 위한 공공시설로 하고, 수익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대부료 부과 (안 제5조)
- 나. 매각대금 분할납부 대상 재산을 일부 조정 (안 제22조)
 - 0 공공사업 철거주민에게 주거용 매각 및 영세민에 400m² 이하를 매각 할 때: 10년 이내 연8% 이자 ⇒ 10년 이내 연5% 이자
 - 0 농경지를 실경작자에 매각할 때: 5년 이내 연8% 이자
- 다. 농경지 대부료 변경: 농지소득금액 1000분의50 혹은 '토지시가표준액의 1000분의8중 저렴한가액' ⇒ 토지 평가액의 1000분의10 (안 제23조②항)
- 라. 생활보호대상 주거용 대부료률을 1000분의10 (안 제23조⑥항)
- 마. 변상금에 대한 대부료 조정을 적용배제 (안 제23조의2①항)
- 바. 건물 대부시 공유면적 산출기준을 세분화하고, 부지에 대한 공유면적도 산출하도록 함 (안 제25조)
- 사. 국유재산 관련 규정 준용 범위를 축소: 국유재산에 관한 규정 ⇒ 국유재산의 질의회신 지침 편람(법령준용 금지) (안 제62조)

3. 참 고 사 항

- 가. 관계법령: “별첨”
- 나. 관계부처 승인: 세회 11150-1359(99.6.18)호 표준안
- 다. 입법예고: 공고 1999-159 (99.7.15)

평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평창군 공유재산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공공시설의 위탁관리) 군수는 지방자치법 제1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시설의 관리사무를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가 영업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전대사용하는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영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제6조 제1항제1호중 “조정”을 “지급”으로 하고,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보상금은 신고자의 은닉재산신고서 접수후 담당공무원의 현지조사 결과에 의하여 신고인에게 지급하며, 지급기한은 공유재산으로 확정된 연도의 말일까지로 한다.

제7조 제2항제2호를 삭제하고,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기타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의 심의사항중 영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하여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수 있다.

제8조를 삭제한다.

제11조 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군지역(광역시의 군지역 포함): 900제곱미터 이하 토지

제14조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5조 중 “공유재산관리 담당공무원은”을 “법 제73조제2항 규정에 의한 재산관리관은”으로 한다.

제17조를 삭제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잡종재산의 현황파악) 재산관리관은 영 제80조제2항에 의한 공유재산실태조사시 다음각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도시계획 및 재개발지구의 재산
3. 영세하여 재산보존 가치가 없는 재산
4. 타인의 토지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5. 소송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

제19조의2중 “제100조제2항제5호”를 “제100조제2항제5호 제4항”으로 한다

제19조의3 제6호 중 “인정하는 지역의”를 “인정하는”으로 한다.

제20조를 삭제 한다.

제22조 제1항 제5호 및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영 제95조제2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때
6.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영세농가 또는 저소득층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때

제22조 제2항제1호를 삭제하며, 제2호 중 “제1호를”을 “제5항제1호”로 하고 제3호를 삭제하며, 제3항제1호 중 “제6호”를 “제2호, 제6호”로 하고, 제16호 “를” 및 제16호 “로” 하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4항제5호

- 중 “기업에 공장건설에 필요한”을 “기업의 사업목적상 필요한”으로 한다
5.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용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제23조 제1항 중 “사용료율”을 “사용료의 요율”로 하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토록한 토지의 대부료는 당해토지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한다.

제23조 제3항중 “영 제92조제3항제2호 규정에 의한 광업채석의”를 “광업채석의”로 하고, 제4항중 “영 제92조제3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호의“를 ”다음 각호의”로 하며, 제6항중 “1000분의25로 한다”를 “당해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위25로 한다”로 하고, 후단에 단서조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 대상자의 경우는 당해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10으로 한다.

제23조 제8항중 “공장건설을 목적으로 공유재산을”을 “사업목적상 필요하여 공유재산을”로 하고, 제9항중 “벤처기업전용단지, 기술연구집단화단지 및 벤처기업 집적시설의“를 ”벤처기업전용단지, 벤처기업집적시설의“로 하며, ”기술연구집단화단지의 지정을 받은자 또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자가 사용하는 경우“를 ”또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자가 사용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벤처기업 창업자 또는 지원 관련 개인 단체 법인 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로 하고, ”하되, 월할로 계산할수 있다“를 ”할수있다“로 한다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의2(대부료등에 관한 특례) ① 공유재산을 계속해서 2개년도 이상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하는 경우에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연간 대부료(사용료를 포함한다. 이 조에서 이하 같다)가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대부료 보다 10퍼센트이상 증가한 때에는 당해 연도의 대부료 인상을은 제23조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과같이 적용한다.

증가율	대부료 인상율	
10 % 이상	20 % 미만	$10 \% + (\text{증가율} - 10 \%) \times 0.3$
20 % 이상	50 % 미만	$13 \% + (\text{증가율} - 20 \%) \times 0.1$
50 % 이상	100% 미만	$16 \% + (\text{증가율} - 50 \%) \times 0.06$
100% 이상	200% 미만	$19 \% + (\text{증가율} - 100\%) \times 0.03$
200% 이상	500% 미만	$22 \% + (\text{증가율} - 200\%) \times 0.01$
500% 이상		$25 \% + (\text{증가율} - 500\%) \times 0.005$

② 영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연간 대부료 또는 사용료가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근지역의 사유재산 임대료에 비해 현저히 차이가 나서 불가피하게 조정이 필요하거나 대부 또는 사용희망자 없어 2회이상 경쟁입찰이 유찰된 경우에는 제23조제1항 제2항 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20퍼센트 범위내에서 일정기간에 한하여 이를 가감조정 할수 있다.

③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료 또는 사용료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을 적용 받은자인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여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감액조정 할수 없다.

제23조의3 제1호 가목중 “외국인투자촉진법(이하 외·투법 이라 한다)”를 “외국인투자촉진법”으로 하고, 나목중 “이상으로 제조업인 사업”을 “이상인 사업”으로 하며, 다목을 “1일평균 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사업”으로하고, 마목중 “수출지향형 외국인”을 “외국인”으로 하며, 제2호 가목중 “미만으로 제조업인 사업”을 “미만인 사업”으로 하고, 나목을 “1일평균 고용인원이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으로 하며, 라목중 “수출지향형 외국인”을 “외국인”으로 하고, 제3호 가목중 “미만으로 제조업인 사업”을 “미만인 사업”으로 하며, 나목을 “1일평균 고용인원이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으로 하고, 라목중 “수출지향형 외국인”을 “외국인”으로 한다.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제23조의 기준에 의한 건물의 대부료 산출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건물전체의 대부에 있어서는 건물평가액과 부지평가액을 합산한 금액을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부지평가액은 당해건물의 바닥면적 이외에 건물의 사용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산출한다. 다만, 경계가 불명확하여 전용면적 산출이 불가한 경우에는 건축법에 의한 현재의 건폐율을 역산하여 건물이 속한 부지면적(이하 같다)을 산출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2.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의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은 대부를 받은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한 평가액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 한다.

대부를 받은자가 다른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 (건물의 경우에는 해당층의 총면적)	×	대부를 받은자가 전용으로 사용 하는 면적
		공용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전용 으로 사용하는 총면적 (건물의 경우에는 해당층의 총면적)

3. 제1호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2층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는 건물평가액과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

가. 1층은 부지 평가액의 3분의2

나. 2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1

다. 지하층은 제4호를 적용한다.

4. 제1호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3층이상의 건물 전부 또는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는 건물평가액과 다음각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

가. 1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1

나. 2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1

다. 3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1

라. 4층 이상은 부지평가액의 5분의1

마. 지하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1

바. 지하2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1

사. 지하3층 이하는 부지평가액의 5분의1

5. 지하에 단독으로 있는 건물등에 대하여는 건물 평가액과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

가. 지하1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1

나. 지하2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1

다. 지하3층 이하는 부지평가액의 4분의1

6. 재산관리관이 대부건물의 특수한 사정으로 공유면적의 산출이 심히 불합리 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공유면적을 산출할수 있다. 이 경우 불합리 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서류와 공유면적 산출기준을 대부료 산정조사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26조 제3항을 삭제하며, 제4항중 “제1항 내지 제3항의”를 “제1항 및 제2항의”로 하고, “유예할 수”를 “유예하거나 따로 정할 수”로 한다.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조(대부료 등의 사용)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대부료(사용료, 변상금을 포함한다) 수입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제29조 제1항중 “공유재산 재산관리관은”을 “재산관리관은”으로 하고, “대부 및 사용허가정리부”를 “대부정리부”로 한다.

제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2 (신탁의 종류) 영 제102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을 신탁 하는 경우에 있어서 신탁의 종류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신탁업무 감독규정 제12조에 의한 부동산 관리신탁 부동산처분신탁 및 토지신탁(임대형 토지신탁과 분양형 토지신탁으로 구분한다.)으로 한다.

제39조의2 제1항중 “농업진흥구역안”을 “농업진흥지역안”으로 하고, 제3항 제1호중 ”사용하거나 부동산 투기를 할“을 ”사용할“로 하며, 제5항제2호 중 ”위치하거나“를 ”위치하거나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 또는“으로 하고, 제3호중 “건축 최소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를 “건축법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미달하는”으로 한다.

제39조의4 제1항제4호중 “조성한 업종별 공장용지 또는 개별공장”을 “조성한”으로 하고, 제3항제2호중 “공장건설사업”을 “사업”으로 하며, 제3호중

“공장용지내”를 “사업장내”로 하고, 제4항제1호중 “외·투법시행령”을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으로 하며, 제3호중 “공장용지내의 재산”을 “사업장내의 재산”으로 하고, 제4호중 “수출지향형 외국인”을 “외국인”으로 하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감액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각목적이 달성될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매각재산을 담보로 근저당설정 등을 하거나 매각을 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러한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매각재산을 환수한다는 것을 영 제95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45조 제1항중 “도 시군구 읍면동의”를 “당해 군의”로, 고려하여 시군별로 청사신축계획서에 의거“를 ”고려하여“로 하고, ”한다. 다만, 매년 청사신축 시행계획은 신축년도의 전년도 6월말까지 수립하여야 한다.“를 ”한다“로 한다.

제49조 제1항중 “경찰관서, 농촌지도소 및 보건소등의 관서를”을 “유관 행정관서를”로 한다.

제50조중 “공용주택과 동 목적을 위하여 전세로 사용하고 있는 공용전세주택을 말한다”를 공용주택을 말한다“로 한다

제6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0조의2 (준용) 채권인 공용전세주택에 대하여는 제50조 내지 제6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2조중 “국유재산에 관한 규정을”을 “국유재산의 질의회신 지침 편람등
예규를”로 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의 적용례) 제22조제1항제5호 제6호 제2항제2호 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와 제23조제2항 제6항 단서, 제9항, 제10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 및 제25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건물대부료 산출기초는 이조례를 공포한 날 이후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하거나 기존의 대부계약 사용허가에 의하여 계속 대부 사용중인자로서 다음연도의 대부료 사용료를 다시 부과하는 경우 및 최초로 대부계약 또는 사용허가(변상금 부과를 포함한다)를 한 재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개정 사유
<p>제5조 (마을회관 등의 위탁관리)</p> <p>① 군수는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마을회관 노인회관 또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32조의 농어촌정주생활권 개발사업으로 시행한 주민공동시설의 운영 및 그 관리업무를 마을을 대표하는 “마을회”에 무상으로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관리자는 군수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p>	<p>제5조 (공공시설의 위탁관리) 군수는 지방자치법 제1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시설의 관리사무를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p> <p>이 경우 수탁자가 영업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전대 사용하는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영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부과하여야 한다.</p>	<p>위탁 대상을 지방자치법 제 135조 규정상의 공공 시설로 규정하고 수익목적으로 사용시에는 유상 사용을 명확히 함</p>
<p>제6조 (은닉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p> <p>①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8조에 의거 은닉된 공유재산(이하 은닉재산이라 한다)을 발견하여 신고한자(이하 신고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p> <p>1. 보상금액은 부동산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이 500만원 이하까지는 100분의20까지로 하고,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한 금액에 100분의2를 추가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내에서 조정 할 수 있다</p> <p>③ 보상금은 공유재산으로 확정된 연도의 말일까지 신고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p>	<p>6조 (은닉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p> <p>① -----</p> <p>-----</p> <p>-----</p> <p>-----</p> <p>-----</p> <p>1. -----</p> <p>-----</p> <p>-----</p> <p>-----</p> <p>-----</p> <p>-----</p> <p>-----지급 -----.</p> <p>③ 보상금은 신고자의 은닉재산 신고서 접수후 담당공무원의 현지조사 결과에 의하여 신고인에게 지급하며 지급기한은 공유재산으로 확정된 연도의 말일까지로 한다.</p>	

현 행	개 정 (안)	개정 사유
<p>제7조 (공유재산심의회) ① (생략)</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사항 2. <u>중요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u> 3. <u>기타 공유재산에 관한 중요사항</u> <p><신설></p>	<p>제7조 (공유재산심의회)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1.----- -- 2. <삭제> 3. 기타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 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p> <p>③ 제2항의 심의사항중 영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하여는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생략할수 있다</p>	<p>행정간소화 및 규제완화</p> <p>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결정</p> <p>취득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에 대한 심의 생략</p>
<p>제8조 (처분재원 비도) 공유재산의 처분 재원은 반드시 처분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 조성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으로 조성된 재산 또는 법령조례등에 의하여 그 비도가 지정된 재산의처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8조 <삭제></p>	<p>영 제83조의2 신설 규정과 같은 내용으로 삭제</p>
<p>제11조(관리 및 처분) ①-② (생략)</p> <p>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의 용도변경이나 용도폐지를 할 경우 다음 각호의 재산에 대하여는 공유재산심의회심의를 거치지 아니할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2 . (생략) 3. 군지역: 900제곱미터이하 토지 	<p>제11조 (관리 및 처분)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 1. -2 . (현행과 같음) 3. 군지역(광역시의 군지역 포함): 900제곱미터 이하 토지</p>	<p>광역시 군지역 포함</p>

현 행	개 정 (안)	개정 사유
제14조 (사용허가조건) 행정재산을 사용허가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조건으로 붙여야 한다. 1.-4. (생략) 5. <u>손해보험증서 제출</u> 6. <u>사용허가표지 부착</u> 7.-8. (생략)	제14조(사용허가조건)----- ----- 1.-4. (현행과 같음) 5. <삭제> 6. <삭제> 7.-8. (현행과 같음)	영 93조증복 실효성 없음
제15조 (사용 허가부의 비치) 공유 재산 담당공무원은 반드시 행정 재산의 사용허가부를 비치하고 기록보존 하여야 한다.	제15조 (사용허가부의 비치) 법 제 73조제2항 규정에 의한 재산관리관은 -----	사용 허가부 비치 의무자 를 분명히함
제17조 (불용재산의 처분) 공유재산 중 재산가치의 증대와 보존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이를 매각 처분하여 수익성향이 높은 타 재산을 조성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임야 구획정리예정 지구 기타 사유로 계속 보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 <삭제>	영 제83조2 신설규정과 유사함
제18조 (잡종재산의 현황파악) ① 잡종재산의 적정한 관리와 처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파악하여야 한다. 1.- 5.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별도 재산목록을 작성 비치하여 취득처분과 대부에 특히 유의하도록 하여 재산운영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제18조 (잡종재산의 현황파악) 재산 관리관은 영 제80조제2항에 의한 공유재산실태조사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1.- 5. (현행과 같음)	실태조사시 특이 사항을 파악

현 행	개 정 (안)	개정 사유	
<신 설>	5. 영 제95조제2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때 6.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영세농가 또는 저소득층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때.	제2항1호를 대체 규정 제2항3호를 대체 규정	
<신 설>	② 영 제10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을 10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8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영 제95조제2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때. 2. 제39조의2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때 3.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영세농가 또는 저소득층에게 400 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때	② ----- ----- ----- ----- ----- 1. <삭 제> 2. -----제5항제1호----- ----- 3. <삭 제> ③ ----- ----- ----- ----- ----- 1. -----제2호, 제6호----- ----- 및 제16호----- ----- 2.-4. (현행과 같음) 5.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용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 사업용지, 기업활동	제1항5호로 대체 됨 제1항6호로 대체 됨
		농경지를 매각하는 경우 포함 개정전 제22조제8호규정 추가	
<신 설>			

현 행	개 정 (안)	개정 사유
	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④ 영 제10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4. (생략) 5. 외국인 투자기업에 공장건설에 필요한 재산을 매각하는 때	1.-4. (현행과 같음) 5. -----기업의 사업목적상	매각용도의 제한을 폐지
제23조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	제23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	
① 영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연간대부료 또는 사용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50으로 한다. 다만, 공용 공공용의 목적과 취락개선사업에 사용할 재산으로서 인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1000분의25로 한다. ② 영 제92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작목적으로 사용하는 토지의 대부료는 대부면적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97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득금액의 1000분의50 또는 토지시가표준액의 1000분의8 중 저렴한 금액으로 한다. ③ 영 제92조제3항제2호 규정에 의한 광업채석의 목적으로 대부 또는 허가한 때에는 다음 각호에	① ----- ----- 사용료의 요율은 ②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토록한 토지의 대부료는 당해 토지 평정가격의 1000분의10으로 한다. ③ 광업채석의 -----	용어정리 농경지 대부료 요율변경 일원화 영 제92조제3항 삭재 관련

현 행	개 정 (안)	개정 사유
의하여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한다.		
1. -3. (생략) ④ 영 제92조제3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호의 재산에 대한 연간대부료 또는 사용요율은 당해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40으로 한다.	④ 다음 각호의 ----- ----- ----- ----- 1. ----- 2. ----- -----	영 제92조제3항 삭제관련
1. 도시계획에 저촉되는 재산 2.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 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⑤ (생략) ⑥ 주거용 건물이 있는 재산(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에 한한다)의 사용요율 또는 대부요율은 1000분의25로 한다. <단서신설>	⑤ (현행과 같음) ⑥ ----- ----- -----당해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25로 한다. 다만,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경우는 당해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10으로 한다.	생활보호대상 부담완화
⑦ (생략) ⑧ 영 제88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이 공동건설을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연간 대부료 또는 사용요율은 당해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10이상으로 하되, 월 할로 계산할 수 있다.	⑦ (현행과 같음) ⑧ ----- ----- 사업목적상 필요하여 공유재산을 ----- ----- ----- ----- ----- .	외국인투자 범위 확대
⑨ 벤처기업육성에 관한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전용단지, 기술연구집단화 단지 및 벤처기업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⑨ ----- ----- 벤처기업 집적 시설의 -----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

현 행	개 정 (안)	개정 사유														
<p><u>벤처기업 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 기술연구 집단화단지의 지정을 받은자 또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설치자가 사용하는 경우 대부료 또는 사용요율은 당해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하되, 월 할로 계산할 수 있다.</u></p>	<p>-----</p> <p>-- 또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설치자가 사용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벤처기업 창업자 또는 지원관련 개인, 단체, 법인, 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p> <p>----- 할 수 있다</p>															
<p>제23조의2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공유재산을 계속해서 2개년도 이상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하는 경우에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연간대부료(사용료 변상금을 포함한다. 이조에서 이하 같다)가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 야할 연간 대부료 보다 10페센트 이상 증가한 때에는 당해 연도의 대부료 인상을은 제2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p>	<p>제23조의2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① -----</p> <p>----- (사용료를 포함한다) 이조에서 이하 같다)가 -----</p> <p>-----</p> <p>-----</p> <p>-----</p> <p>-----</p> <p>-----</p> <p>-----</p> <p>-----</p>	<p>변상금은 조정을 적용대상에서 제외</p>														
<table border="1"> <thead> <tr> <th>증가율</th> <th>대부료 인상을</th> </tr> </thead> <tbody> <tr> <td>10% 이상 20% 미만</td> <td>$10\%(\text{증가율} - 10\%) \times 0.3$</td> </tr> <tr> <td>20% 이상 50% 미만</td> <td>$13\%(\text{증가율} - 20\%) \times 0.1$</td> </tr> <tr> <td>50% 이상 100% 미만</td> <td>$16\%(\text{증가율} - 50\%) \times 0.06$</td> </tr> <tr> <td>100% 이상 200% 미만</td> <td>$19\%(\text{증가율} - 100\%) \times 0.03$</td> </tr> <tr> <td>200% 이상 500% 미만</td> <td>$22\%(\text{증가율} - 200\%) \times 0.01$</td> </tr> <tr> <td>500% 이상</td> <td>$25\%(\text{증가율} - 500\%) \times 0.005$</td> </tr> </tbody> </table>	증가율	대부료 인상을	10% 이상 20% 미만	$10\%(\text{증가율} - 10\%) \times 0.3$	20% 이상 50% 미만	$13\%(\text{증가율} - 20\%) \times 0.1$	50% 이상 100% 미만	$16\%(\text{증가율} - 50\%) \times 0.06$	100% 이상 200% 미만	$19\%(\text{증가율} - 100\%) \times 0.03$	200% 이상 500% 미만	$22\%(\text{증가율} - 200\%) \times 0.01$	500% 이상	$25\%(\text{증가율} - 500\%) \times 0.005$	<p>-----</p> <p>-----</p> <p>-----</p> <p>-----</p> <p>-----</p> <p>-----</p> <p>-----</p>	
증가율	대부료 인상을															
10% 이상 20% 미만	$10\%(\text{증가율} - 10\%) \times 0.3$															
20% 이상 50% 미만	$13\%(\text{증가율} - 20\%) \times 0.1$															
50% 이상 100% 미만	$16\%(\text{증가율} - 50\%) \times 0.06$															
100% 이상 200% 미만	$19\%(\text{증가율} - 100\%) \times 0.03$															
200% 이상 500% 미만	$22\%(\text{증가율} - 200\%) \times 0.01$															
500% 이상	$25\%(\text{증가율} - 500\%) \times 0.005$															
<신설>	② 영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연간 대부료 또는 사용료가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근지역의 사유재산 임대료에 비해 현저히 차이가 나서 불가피하게 조정이 필요하거나 대부 또는 사용희망자가 없어 2회 이상 경쟁입찰이 유찰된 경우에는 제23조 제1항, 제2항	<p>대부료 요율을 20% 범위에서 조정이 가능케 함</p>														

현 행	개 정 (안)	개정 사유
<p><신 설></p>	<p>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20 퍼센트 범위내에서 일정 기간에 한하여 이를 가감조정할 수 있다. ③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 료 또는 사용료가 당해 재산평정가 격의 1000분의 10을 적용받는 자인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여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감액 조정할수 없다.</p>	<p>최저율 적용 받는 경우는 감액조정 못 하도록 함</p>
<p>제23조의3 (대부료 또는 사용료감면) 외국인 투자촉진법 제13조제7항 및 영 제92조의2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에 공장건설등을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임대 대부 하는경우의 임대료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율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p> <p>1. 전액 감면을 하는 때는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사업</p> <p>가. 외국인투자촉진법(이하 외· 투법이라 한다)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 시하고 있는 재정경제부장관고 시 고도기술수반사업 부문으로 서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의 사업</p> <p>나.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2천 만달러 이상으로 제조업인사업</p> <p>다. 고용창출 효과가 300명 이상 으로 제조업인 사업</p> <p>라. (생략)</p> <p>마. 수출지향형 외국인 투자기업 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100퍼센 트를 수출하는 사업</p> <p>마-사. (생략)</p>	<p>제23조의3 (대부료 또는 사용료감면) ----- ----- ----- ----- ----- ----- 1. ----- ----- ----- 가. 외국인투자촉진법 ----- ----- ----- ----- ----- ----- ----- ----- ----- 나. ----- ----- ----- 다. 1일평균 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사업 라. (현행과 같음) 마. 외국인 ----- ----- ----- ----- ----- 바-사. (현행과 같음)</p>	<p>용어정리</p> <p>외국인 투자 범위확대</p> <p>외국인 투자 범위확대</p> <p>용어의 중복 정리</p>

현 행	개 정 (안)	개정 사유
2. 75퍼센트를 감면하는 때는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사업 가.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1천 만달러 <u>미만으로 제조업인 사업</u> 나. 고용창출 효과가 200명 이상 300명 미만으로 제조업인 사업 다. (생략) 라. 수출지향형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바. (생략)	2. ----- ----- 가. ----- -----미만인 사업 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200명이 300명 미만인 사업 다. (현행과 같음) 라. 외국인 ----- ----- ----- 마.-바. (현행과 같음)	외국인투자 범위 확대 외국인 투자 범위 확대 용어 중복
3. 50퍼센트를 감면하는 때는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사업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00 만달러 이상 1천만달러 <u>미만으로 제조업인 사업</u> 나. 고용창출 효과가 100명 이상 200명 미만으로 제조업인 사업 다. (생략) 라. 수출지향형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사. (생략)	3. ----- ----- 가. ----- -----미만인 사업 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 다. (현행과 같음) 라. 외국인 ----- ----- ----- 마.-사. (현행과 같음)	외국인 투자 범위 확대 외국인 투자 범위 확대 용어 중복
제25조 (건물대부료 산출기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대부료 산출은 다음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건물 전체의 대부에 있어서는 건물 평가액과 부지평가액(당해 건물바닥면적 이외에 건물 사용자가 전용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합산한 금액을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	제25조 (건물대부료 산출기준) -- -- 1. 건물 전체의 대부에 있어서는 건물 평가액과 부지평가액을 합산한 금액을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부지평가액은 당해 건물의 바닥면적 이외에 건물의 사용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산출한다.	

현 행	개 정 (안)	개정 사유						
	<p>다만, 경제가 불명확 하여 전용면적 산출이 불가한 경우는 건축법에 의한 현재의 건폐율을 역산하여 건물이 속한 부지면적(이하 같다)을 산출하여 평가하여야 한다.</p> <p>2.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 종전 건물의 의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은 공용면적만 대부를 받은자가 전용으로 사용 하는 면적에 다른사람과 공용으 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한 평가액 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다음 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다.</p> <table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50%;">대부를 받은자가 전 용으로 사용하는면적</td> <td style="width: 50%; text-align: right;">X —————</td> </tr> <tr> <td>다른사람과 공용</td> <td></td> </tr> <tr> <td>으로 사용하는 총 면적(건물의 경우 해당층의 총면적)</td> <td style="text-align: right;">공용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전용으로 사 용하는 총면적(건물 은 해당층 총면적)</td> </tr> </table> <p>3. 제1호,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2층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 부하는 경우에는 건물 평가액과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을 당해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p> <p>가. 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2 나. 2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1 다. 지하층은 제4호를 적용한다.</p> <p>4. 제1호,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3층이상의 건물 전부 또는 일부 를 대부하는 경우에는 건물평가 액과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p> <p>가. 1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1 나. 2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1</p>	대부를 받은자가 전 용으로 사용하는면적	X —————	다른사람과 공용		으로 사용하는 총 면적(건물의 경우 해당층의 총면적)	공용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전용으로 사 용하는 총면적(건물 은 해당층 총면적)	
대부를 받은자가 전 용으로 사용하는면적	X —————							
다른사람과 공용								
으로 사용하는 총 면적(건물의 경우 해당층의 총면적)	공용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전용으로 사 용하는 총면적(건물 은 해당층 총면적)							
3. 3층 이상 건물을 충별로 대부 하는 경우에는 건물 평가액과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 액을 당해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		용어정리						
가. 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1 나. 2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1		용어정리						

현 행	개 정 (안)	개정 사유										
<p>다. 3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1 라. 4층이상은 부지평가액 5분의1 마 지하1층은 부지평가액 3분의1 바. 지하2층은 부지평가액 4분의1 사. 지하3층 이하는 부지평가액의 5분의1</p> <p>4.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는 대부를 받은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하여 당해 재산의 평가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동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다.</p> <table> <tr> <td>대부를 받은자가 전용</td> <td></td> </tr> <tr> <td>대부를 받은자가</td> <td>으로 사용하는 면적</td> </tr> <tr> <td>다른 사람과</td> <td>x</td> </tr> <tr> <td>공용으로 사용</td> <td>공용으로 사용하는자</td> </tr> <tr> <td>하는 총면적</td> <td>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td> </tr> </table>	대부를 받은자가 전용		대부를 받은자가	으로 사용하는 면적	다른 사람과	x	공용으로 사용	공용으로 사용하는자	하는 총면적	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	<p>다. 3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1 라. 4층이상은 부지평가액 5분의1 마 지하1층은 부지평가액 3분의1 바. 지하2층은 부지평가액 4분의1 사. 지하3층 이하는 부지평가액의 5분의1</p>	
대부를 받은자가 전용												
대부를 받은자가	으로 사용하는 면적											
다른 사람과	x											
공용으로 사용	공용으로 사용하는자											
하는 총면적	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											
<p><신 설></p>	<p>5. 지하에 단독으로 있는 건물등에 대하여는 건물 평가액과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p> <p>가. 지하1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1 나. 지하2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1 다. 지하3층이하는 부지평가액4분의1</p> <p>6. 재산관리관이 대부건물의 특수한 사정으로 공동면적의 산출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른기준을 적용하여 공동면적을 산출할수 있다. 이 경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서류와 공동면적 산출기준을 대부료 산정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p>	<p>지하의 단독 건물의 평가 기준을 정함</p> <p>특수 건물의 공동면적을 산출 부과할 수있는 근거</p>										
<p><신 설></p>												

현 행	개 정 (안)	개정 사유
제26조 (대부료 등의 납기) ① - ② (생략) <u>③ 경작목적으로 대부한 농지의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97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수입금이 확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로 할수다.</u> <u>이 경우 계약종료 연도의 대부료는 대부기간 종료전에 이를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u> <u>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천재 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 부과한 대부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할수 있다.</u>	제26조 (대부료 등의 납기) ① - ② (현행과 같음) <u>③ < 삭제></u> <u>④ 제1항 및 제2항의 -----</u> <u>-----</u> <u>-----</u> <u>-----</u> <u>-----유예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u>	제23조 제2항 개정과 관련 제3항 삭제 관련
제27조 (대부료의 사용제한) 대부료 수입은 재산 조성비와 재산유지 관리비에 충당하여야 하며 타재원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7조 (대부료 등의 사용)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대부료(사용료, 변상금을 포함한다) 수입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실효성 없는 현행 규정을 정비
제29조 (대부정리부 비치) ① 공유 재산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대부 재산의 대부 및 사용허가 정리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29조 (대부정리부 비치) ① 재산 관리관은----- --- 대부정리부 ----- <u>-----</u> . ② (현행과 같음)	용어정리 및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
<신설>	제31조의2 (신탁의 종류) 영 제102조의4 규정에 의하여 임종재산을 신탁하는 경우에 있어서 신탁의 종류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신탁업 감독규정 제12조에 의한 부동산 관리신탁 부동산처분신탁 및 토지신탁(임대형 토지신탁과 분양형 토지신탁으로 구분한다)으로 한다	신탁의 종류를 정함

현 행	개 정 (안)	개정 사유
제39조의2 (수의계약 매각범위 등) ① 영 제95조제2항제2호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종경지는 농지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u>농업진흥구역안</u> 농지를 10,000제곱미터 이하까지 매각하는 때 ② (생략) ③ 영 제95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양여받은 폐천부지는 시의 동지역은 3,300 제곱미터 이하, 시군의 읍면지역은 6,600제곱미터 이하까지 그 점유자(하천법 제25조에 의하여 점용허가를 받은자가 양여 이후 계속 대부계약으로 사용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에게 매각할 수 있다. 다만, 도지사가 보존의 가치가 없다고 인정한 재산으로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위 매각면적 기준을 초과하여 매각할 수 있다. 1. 도시계획상 도로, 공공주차장, 공원 등의 공공시설 용지가 아닌 재산(장래 공공시설 용지로 예정되어 있거나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매입자가 향후 10년간 매각목적외로 사용하거나 부동산 투기를 할 염려가 없는 경우 2.-3. (생략) ④ (생략) ⑤ 영 제95조제2항제25호에 의한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39조의2 (수의계약 매각범위 등) ① ----- ----- ----- ----- ----- ----- ----- ----- ----- ----- ----- ----- ----- ----- ----- ----- ----- ----- ----- 1. ----- ----- ----- ----- ----- ----- ----- ----- ----- ----- ----- ----- ----- ----- ----- ----- ----- ----- 2.-3.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⑤ ----- ----- ----- ----- ----- ----- ----- ----- -----	보호구역도 매각대상에 포함됨 실효성 없는 부동산 투기 삭제

현 행	개 정 (안)	개정 사유
<p>제39조의4 (매각대금의 감면) ① 영 제96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에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할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 이 경우 조성원가는 토지매입비와 투자개발비(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비를 포함한다)로 한다.</p> <p>1.-3. (생략)</p> <p>4. 군수가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하여 직접 <u>조성한 업종별 공장용지</u> 또는 <u>개별공장용지내의</u> 재산</p> <p>② (생략)</p> <p>③ 영 제96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 가격을 전액 감면하는 경우에 대상 재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p> <p>1. (생략)</p> <p>2.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30억 달러 이상인 대형 <u>공장건설사업</u> 및 동 부대시설 내의 재산</p> <p>3. 외국인 투자기업이 1일평균 고용인원이 1천명 이상인 <u>공장용지내의</u> 재산</p> <p>④ 영 제96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 가격을 50퍼센트 감면하는 경우에 대상재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p> <p>1. <u>외투법시행령</u>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있는 재정경제부장관 고시고도기술 수반사업 부문으로서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500만달러이상 사업장내의 재산</p> <p>2. (생략)</p>	<p>제39조의4 (매각대금의 감면) ①--</p> <p>-----</p> <p>-----</p> <p>-----</p> <p>-----</p> <p>-----</p> <p>-----</p> <p>1.-3. (현행과 같음)</p> <p>4. ----- 조성한 ----- 외국이 투자 기업의 범위 확대</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p> <p>-----</p> <p>-----</p> <p>1. (현행과 같음)</p> <p>2. ----- 사 업 외국인 투자 기업의 범위 확대</p> <p>3. ----- 사업장내</p> <p>4. -----</p> <p>1.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9조</p> <p>-----</p> <p>-----</p> <p>-----</p> <p>-----</p> <p>2. (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개정 사유
제50조 (정의) 이 조례에서 “관사”라 함은 군수,부군수,시설관리사등 소속공무원의 사용에 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공용주택과 동 목적을 위하여 전세로 사용하고 있는 공용전세주택을 말한다.	제50조 (정의) ----- ----- ----- 공용주택을 말한다.	공용전세주택도 관사를 준용
<신설>	제60조의2 (준용) 채권인 공용전세주택에 대하여는 제50조 내지 제6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채권인 공용전세 주택도 관사를 준용
제62조 (준용) 군유재산의 취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u>국유재산에 관한 규정을</u> 준용한다.	제62조 (준용) ----- ----- -----국유재산의 질의회신 지침 예규를 -----.	국유재산 준용범위 제한(법령 제외)
<부칙 신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매각대금분할납부 등의 적용례) 제22조제1항제5호,제6호,제2항제2호,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와 제23조제2항,제6항 단서, 제9항,제23조의2제2항의개정규정에 의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 및 제25조의 개정 규정에 의한 건물 대부료 산출기초는 이 조례를 공포한날 이후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기존의 대부계약 사용허가에 의하여 계속대부 사용중인 자로서 다음연도의 대부료 사용료를 다시 부과하는 경우 및 최초로 대부계약 또는 사용허가(변상금 부과를 포함한다)를 한 재산부터 적용한다.	

관 계 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제135조(공공시설):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③ 제2항의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취득처분은 이를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 한다.
 1. 지방재정법외의 다른 법률에 의한 무상귀속
 2.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
 3. 법원의 판결에 의한 소유권 등의 취득 상실
 4.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손실보상
 5. 토지수용법에 의한 재산의 수용
 6.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의한 양여
 7.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에 의한 중소기업자에 대한 양여
 8.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후 2회계연도가 경과되지 아니한 재산의 취득처분
 9. 다른 법률에 의하여 취득처분이 의무화된 재산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9조(영구시설물의 축조금지): 법 제82조제1항 및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는

허가 또는 대부 받은 재산에 건물 기타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재산의 관리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의 기부를 조건으로 한 축조 및 자진철거를 조건으로 한 축조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대부기간 또는 사용수익 허가기간의 만료시 기부 또는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공장을 축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잡종재산의 매각): ② 잡종재산은 일반 경쟁 입찰에 의하여 매각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2. 농경지를 대부 받은 실경작자에게 매각하는 때. 이 경우 매각하는 농경지의 범위 면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6. 하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 허가를 한 재산을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로부터 양여 받은 경우 그 점용 허가를 받은 자에게 당해 재산을 매각할 때. 이 경우 매각하는 재산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8.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철거주민에게 주거용으로 재산을 매각할 때.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의2(용도를지정한 매각 또는양여와 특약등기): ① 잡종재산을 매각하는 때에는 매수자에게 당해 재산의 용도와 그 용도에 사용하여야 할 기간을 정하여 매각할 수 있다.